
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6.

발 의 자 : 황정아 · 장종태 · 박용갑
김우영 · 임미애 · 장철민
민홍철 · 진성준 · 황명선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·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특히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·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

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4 신설).
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4(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) ① 울산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또는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·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울산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당해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0조제1호와 제2호,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2조의4(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) ① 울산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또는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·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조 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② 울산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당해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0조제1호와 제2호,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